



공무원 행동강령

적용대상: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전라북도교육청에 파견된 공무원

2022.10.17.

시행

(일부개정)

1 공정한 직무수행

■ 상급자의 부당지시에 대한 처리

상급자에게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

■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

여비,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기하는 행위 금지

■ 인사 청탁 등의 금지

자신 또는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청탁 금지

3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

■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

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(강의, 강연, 기고 등) 시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(국가, 지방자치단체 요청 경우 제외)

■ 경조사 통지 제한

(경조사 통지 허용) 친족,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, 신문·방송 또는 내부통신망 등,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·친목단체 등

2 부당이득의 수수금지

■ 부정 알선·청탁 등의 금지

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·청탁 등을 하는 행위 금지

■ 사적 노무 요구 금지

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

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

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·요구 등 부당 행위 금지

■ 금품 등의 수수 금지

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, 약속하는 행위 금지

4 행동강령책임관 지정

■ 행동강령책임관

- 도 교 육 청: 감사관
- 직 속 기 관: 총무과장(없는 경우 총무부장)
- 교육지원청: 행정지원과장
- 공립 학 교: 교감(원감), 없는 경우 학교장(원장)이 교사 중에서 지정

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

2022. 5. 19.

시행

적용대상: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와 고위공직자, 전라북도교육청에 파견된 공직자와 고위공직자

1 신고 및 제출의무

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

공직자는 수행중인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, 직무관련자는 해당 공직자에 대해 기피 신청

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

공직자는 신고대상자(본인,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특수관계사업자 등)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사적 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, 그 사실을 신고

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

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퇴직자(최근 2년 이내)인 직무관련자와 골프, 여행,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

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

고위공직자는 3년 이내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임용·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

3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

■ 이해충돌방지담당관

- 도 교 육 청: 감사관
- 직 속 기 관: 총무과장(없는 경우 총무부장)
- 교육지원청: 행정지원과장
- 공립 학 교: 교감(원감), 없는 경우 학교장(원장)이 교사 중에서 지정

2 제한 및 금지 행위

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

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 금지

■ 가족 채용 제한

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

■ 수의계약 체결 제한

고위공직자, 계약업무담당자 등의 가족,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·단체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

■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·수익금지

공직자는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

■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

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물·재산상 이익 또는 제3자의 취득행위 금지

